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393명”을 “16,30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57명”을 “10,370명”으로 한다.

별표 총계란 중 계 “16,393”을 “16,306”으로, 본청 “3,435”를 “3,476”으로, 사업소 “6,430”을 “6,302”로 하고, 일반직 계란 중 계 “6,691”을 “6,737”로, 본청 “2,690”을 “2,731”로, 사업소 “3,530”을 “3,535”로 하며, 5급란 중 계 “894”를 “896”으로, 본청 “490”을 “500”으로, 사업소 “326”을 “318”로 하고, 6급란 중 계 “2,193”을 “2,223”으로, 본청 “1,080”을 “1,098”로, 사업소 “961”을 “973”으로 하며, 7급란 중 계 “2,300”을 “2,319”로, 본청 “895”를 “908”로, 사업소 “1,261”을 “1,267”로 하고, 8급란 중 계 “827”을 “822”로, 사업소 “684”를 “679”로 하며, 연구직 계란 중 계 “273”을 “279”로, 사업소 “99”를 “105”로 하고, 연구사란 중 계 “229”를 “235”로, 사업소 “87”을 “93”으로 하며, “소방정 또는 시설서기관”란을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란으로 하고, 기능직 계란 중 계 “3,585”를 “3,446”으로, 사업소 “2,753”을 “2,614”로 하며, 기능9급란 중 계 “1,399”를 “1,361”로, 사업소 “1,039”를 “1,001”로 하고, 기능10급란 중 계 “632”를 “531”로, 사업소 “443”을 “34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첨1>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조정정원 : 총 정원 △87명

- 증 원 : 57명 (일반직 5급+2, 일반직 6급+30, 일반직 7급+19, 연구사+6)

- 감 원 : 144명 (일반직 8급△5, 기능 9급 △38, 기능 10급 △101)

3. 비용소요 내역 : △1,573,50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비 용 ① - ②	산 출 근 거	
		① +57명	② △144명
총 계	△1,573,504	3,079,199	4,652,703
인건비	△1,297,878	2,555,317	3,853,195
기본급 (봉급)	△489,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19,726 - 5급 : 2,748,500원×2명×12개월 = 65,964천원 - 6급 : 2,284,600원×30명×12개월 =822,456천원 - 7급: 1,755,800원× 19명×12개월 = 400,323천원 - 연구사: 1,819,200원× 6명×12개월 = 32,76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909,639 - 8급: 1,231,300원×5명×12개월 = 73,873천원 - 기능 9급: 1,376,400원 ×38명 ×12월 = 627,639천원 - 기능 10급: 996,800원 ×10명 ×12월 =1,208,122천원
기본급 (정근수당)	△39,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3,579 - 연봉월액 (57명) × 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2,772 - 연봉월액 (144명) × 0.96
수 당	△391,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13,149 - 초과근무수당(59시간 기준) : 313,850천원 - 가족수당 : 55,815천원 - 자녀학비보조 : 2,444천원 - 정근수당가산금 : 41,0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04,457 - 초과근무수당(59시간 기준) : 553,599천원 - 가족수당 : 141,005천원 - 자녀학비보조 :6,173천원 - 정근수당가산금 : 103,680천원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비 용 ① - ②	산 출 근 거	
		① +57명	② △144명
정액급식비	△135,720	57명 × 12월 × 130천원 = 88,920천원	144명 × 12월 × 130천원 = 224,640천원
교통보조비	△118,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9,160 - 5급(2명) × 12월 × 140천원 = 3,360천원 - 6-7급(55명) × 12월 × 130천원 = 85,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07,360 - 8급이하(144명)×12월×120천원 =207,360천원
명절휴가비	△48,991	118,310천원 × 120% = 141,973천원 ※ 월봉급 (1,419,726천원 / 12개월)	159,136천원 × 120% = 190,964천원 ※ 월봉급 (1,909,639천원 / 12개월)
가계지원비	△81,653	118,310천원 × 200% = 236,621천원 ※ 월봉급 (1,419,726천원 / 12개월)	159,136천원 × 200% = 318,274천원 ※ 월봉급 (1,909,639천원 / 12개월)
연가보상비	7,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2,189 (118,310천원÷30일)×10일×0.95 =52,189천원 ※ 월봉급 (1,419,726천원 /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5,089 (159,136천원÷30일)×10일×0.95 = 45,089천원 ※ 월봉급 (1,909,639천원 / 12개월)
물 건 비	△ 129,930	150,390	280,320
기관운영업 무 추 진 비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부서운영업 무 추 진 비	△12,600	350,000원×2부서(30인)×12월= 8,400천원	350,000원×5부서(30인) (30인 이하) = 21,000천원
정원가산업 무 추 진 비	△1,890	57명 × 30,000원 = 1,710천원	144명 × 30,000원 = 3,600천원
직책급업무 추 진 비	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400 - 100,000원×2명(5급)×12개월 =2,400천원 	• 해당없음
직급보조비	△64,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4,880 - 2명(5급)×12월×250천원 = 6,000천원 - 36명(6급)×12월×155천원 = 66,960천원 - 19명(7급)×12월×140천원 = 31,9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9,320원 - 43명(8-9급)×12월×105천원 = 54,180천원 - 101명(10급)×12월×95천원 = 115,140천원
특정업무수 행 할 동 비	△53,400	50,000원 × 57명 × 12개월 = 33,000천원 (5급제외)	50,000원 × 144명 × 12개월 = 86,400천원
이 전 경 비	△ 145,696	373,492	519,188
성과상여금	△32,661	118,310천원 × 80% = 94,649천원 ※ 월봉급 (1,419,726천원 / 12개월)	159,136천원 × 80% = 127,310원 ※ 월봉급 (1,909,639천원 / 12개월)
연금부담금	△83,477	1,574,345천원(월급제) × 14.1% = 222,088천원 - (봉급+정근수당)×14.1%	2,166,091천원 × 14.1% = 305,570천원 - (봉급+정근수당)×14.1%
건강보험부 담 금	△29,558	2,533,440천원 × 2.24% = 56,750천원 - (봉급+전수당) × 2.24%	3,853,021천원 × 2.24% = 86,308천원 - (봉급+전수당) × 2.24%

4. 예산조치 : 감액부분은 총액인건비 지침에 따라 예산절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6,39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0,457명</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16,306명----- ----- 1. ----- ----- ----- 10,370명 ----- 2. ~ 4. (현행과 같음)</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별 표】 서울특별시 정원관리기관 별 직급별 정원표						【별 표】 서울특별시 정원관리기관 별 직급별 정원표					
구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구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 계	16,393	3,435	243	6,285	6,430	총 계	16,306	3,476	6,302
정무직계 ~ 부시장	(생략)					정무직계 ~ 부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6,691	2,690	140	331	3,530	일반직 계	6,737	2,731	3,535
1급 ~ 4급	(생략)					1급 ~ 4급	(현행과 같음)				
5급	894	490	36	42	326	5급	896	500	318
6급	2,193	1,080	54	98	961	6급	2,223	1,098	973
7급	2,300	885	30	114	1,261	7급	2,319	908	1,267
8급	827	83	4	56	684	8급	822	679
9급 ~ 9급상당	(생략)					9급 ~ 9급상당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273	5		169	99	연구직 계	279	105
연구관	(생략)					연구관	(현행과 같음)				
연구사	229	5		137	82	연구사	235	93
지도직 계 ~ 소방정	(생략)					지도직 계 ~ 소방정	(현행과 같음)				
소방정 또는 시설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시설서기관				
소방정 ~ 조교	(생략)					소방정 ~ 조교	(현행과 같음)				
기능직 계	3,585	543	81	308	2,753	기능직 계	3,446	2,614
기능6급 ~ 기능8급	(생략)					기능6급 ~ 기능8급	(현행과 같음)				
기능9급	1,399	251	23	86	1,039	기능9급	1,361	1,001
기능10급	632	99	32	58	443	기능10급	531	342

(다음 페이지에 계속)